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정

I. 사업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23조 및 24조에 의하여 사업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사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하여 수행한다.

1. 강습회
2. 산학연교류 사업
3. 국제교류 사업
4. 학회 활동 홍보 및 섭외 사업
5. 신규회원 및 회원사 유치, 모금 활동
6.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3 조 (구성)

사업위원회는 사업담당 부회장, 사업이사 및 사업간사로 구성한다.

제 4 조 (임원 및 임기)

1. 위원장은 사업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유고시에는 사업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위임하여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2. 사업위원은 사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

1. 관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이사회 및 사업위원회 회의를 둔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 성원 및 의결)

1. 모든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2. 의결은 투의 결과를 표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7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사업 시행을 총괄하며 모든 사업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2. 사업위원은 사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분야 안건의 심의 결정에 참여한다.

제 8 조 (재정)

1. 본 위원회의 재정은 학회에서 책정하며, 사업위원장이 집행한다.
2. 사업 종료후 수입은 모두 학회에 귀속되며,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신규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I-1. 국제학술교류규정

제 1 조 (목적)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8장에 의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국제학술교류의 범위)

자기학 관련 학술정보교환, 인적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를 그 범위로 한다.

제 3 조 (재정)

학술교류에 필요한 재정은 학회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학회 본 회계에 이관한다.

제 4 조 (조직)

각종 국제학술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 (The Asian Union of Magnetics Societies, AUMS)

1. 본 학회는 AUMS 정관에 따라 대표자 3인을 AUMS 집행의원(Council Member)으로 추천한다.
2. 3인의 대표자는 회장, 사업위원장 및 사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정회원 1명으로 구성한다.
3. 단, 회장 및 사업위원장은 본인을 대리할 대표자를 추천할 수 있다.
4. 대표자 3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AUMS 정관에 따라 3개월 전에 통보한다.
5. 대표자 3인의 임기는 본 학회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 6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II. 학술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정관 제4조 (사업) 및 제6조 (위원회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술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학술위원회 위원은 학술담당 부회장, 학술이사 및 학술간사로 구성한다.

제 3 조 (임무)

학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하여 수행한다.

1. 춘추계 학술발표회
2. 분과별 학술 심포지엄

3. 기타 학술에 관한 제반사항

제 4 조 (임원 및 임기)

1. 학술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유고시에는 학술위원회 위원중에서 학회장이 위임하여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2. 당연직 이외의 학술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

1. 학술위원회 회의는 학술이사회 회의 및 학술위원회 전체회의로 구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학술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학술이사회 및 학술위원회 회의에서는 각기 소관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소관범위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술위원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3.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회의의결은 토의결과를 표결하여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6 조 (재정)

학술위원회의 재정은 학회예산으로 충당하며 학술위원장이 집행한다.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 후 학술위원장이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II-1. 자기학 여름학교(Summer School)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한국자기학회에서는 ICM2012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며 회원들의 자기학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자기학 여름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제 2 조 (계절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1. 본 학회 학술위원회 산하기구로 “자기학 여름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해당연도 학술이사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학술부회장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과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 (학술이사 2명)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4. ICM2012의 조직위원장은 명예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제 3 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1. 운영위원회는 자기학 여름학교의 강의진과 커리큘럼 등의 교육과정과 그 외의 제반사항들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2.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에 계절학교의 연중계획 및 재정을 보고한다.

제 4 조 (기금관리와 운영예산)

1. 기금관리는 학회에서 관리하고 지출한다.
2. 매년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회장단회의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은 회장이 결정한다.
3. 운영예산 집행은 운영위원회가 학회로부터 운영비를 요청, 이관 받은 후 매년 정기총회 4주전까지 정산하여 총무 이사를 통하여 학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II-2. 연구회 운영 규정**제 1 조 (목적)**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6장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을 증진하고 신규사업분야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회 사업을 시행한다.

제 2 조 (연구회 구성)

한국자기학회 회원으로서 박사급 연구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사업 및 결과 보고)

연구회는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연구회 세미나 개최 및 한국자기학회 정기총회에서 연구회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제 4 조 (예산집행)

연구회 사업비는 세미나 연사료, 회의비, 행사비 등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증빙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 5 조 (결과보고)

연구회 사업 종료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III. 편집위원회 규정**제 1 조 (목적)**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정관 제4조 (사업) 및 제6조 (위원회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하여 수행한다.

1. 한국자기학회지의 원고 수집, 논문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일
2. 학술간행물의 발간
3. 신규회원 유치

4. 신규분야 발굴
5. 기타 한국자기학회 이사회의 위임사항

제 3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부회장, 편집이사 및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장, 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위원장은 편집부회장으로 하며, 유고 시에는 편집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위임하여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경력 이상의 자로서
 - ② SCI 등재 학술지 및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된 자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회, 전체 편집위원회, 학술지발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뉴스레터 소위원회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전체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4. 뉴스레터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5. 편집이사회 및 전체 편집위원회에서는 각기 소관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소관범위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뉴스레터 소위원회는 뉴스레터 편집을 위한 업무를 협의한다.

제 6 조 (회의 성원 및 의결)

1. 모든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2. 의결은 투의 결과를 표결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7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학회에서 책정하며, 편집위원장이 집행한다.

제 8 조 (논문심사 및 투고요령)

논문심사 및 투고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9 조 (회지발행)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학회지 연간발행일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한국자기학회지는 연간 6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IV. Journal of Magnetics (JoM)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정관 제4조 (사업) 및 제6조 (위원회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된 JoM 편집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JoM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하여 수행한다.

1. JoM의 원고 수집, 논문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일
2. JoM 홍보

제 3 조 (구성)

JoM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 in Chief), 집행편집장(Executive Editors), 부편집장(Associate Editors), 및 국내 외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s) 등 총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집행편집장으로 본회 편집부회장이 포함된다.

제 4 조 (위원장, 집행편집장, 부편집장 및 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JoM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임하여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2. 편집위원은 JoM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경력 이상의 자로서
 - ② SCI 등재 학술지 및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된 자
3. JoM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본회 편집부회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회의)

1. JoM 편집위원회는 각기 소관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소관범위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JoM 편집위원장이 재량으로 처리한다. 단 규정 외 범위는 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처리한다.

제 6 조 (회의 성원 및 의결)

1. 모든 회의의 성원은 재적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여로 하되, 위임장으로 참여를 대신할 수 있다.
2. 의결은 투의 결과를 표결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7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JoM 편집위원장은 JoM의 편집을 주관한다.
2. JoM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편집 분야의 제반 안건의 심의 결정에 참여한다.

제 8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JoM 편집위원장이 책정하며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9 조 (논문심사 및 투고요령)

논문심사 및 투고요령은 JoM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0 조 (회지발행)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학회지 연간발행일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JoM은 연간 4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V.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술분과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학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분야별로 자기학 해당분과의 심오한 학문 및 기술 발전에 뜻을 가진 정회원으로서 구성한다.

1. 각 분과는 회장의 임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타 직책과 겸임이 가능하다.

제 3 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1. 경자성 분과위원회 (Permanent Magnetism)
2. 뫼스바우어자성 분과위원회 (Mössbauer Magnetism)
3. 스핀트로닉스 분과위원회 (Spintronics)
4. 양자자성 분과위원회 (Quantum Magnetism)
5. 연자성 분과위원회 (Soft Magnetism)
6. 의과학자기 분과위원회 (Magnetism in Medical Science)
7. 이론 및 계산자기학 분과위원회 (Theory and Computational Magnetism)
8. 자기 센서 및 마이크로소자 분과위원회 (Magnetic Sensors & Application Devices)
9. 자화동역학 분과위원회 (Magnetization Dynamics)
10. 전자기에너지변환 분과위원회 (Electro-Magnetic Energy Conversion)
11. 차세대 자성재료 및 소자 분과위원회 (Emerging Magnetic and Devices)

제 4 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

1. 자기학발전 추세에 맞추어 이사회에서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로서 분과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2. 학술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여건으로 보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서 폐지할 수 있다.

제 5 조 (우수학술분과위원회 포상)

1. 학술분과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활동을 보인 우수분과위원회를 매년 포상할 수 있다.
2. 수상자격 :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한국자기학회 발전에 우수한 기여를 한 분과위원회로 한다.
3. 수상내용 : 매년 1개 또는 다수의 분과위원회에 소정의 상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4. 수상분과 선정 : 국문지 활성화, 학술대회 참여자수, 자체행사 운영여부 등 사업위원회가 정한 활동 평가 점수표에 따라 최우수분과위원회 1개 또는 다수를 사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단에서 수상 분과를 결정한다. 단,

사업위원회 혹은 회장단에서 수상분과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수상분과를 선정하지 않는다.

5. 시상 방법 과 시기 : 시상은 한국자기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매년 말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6. 기금 : 학회등록비에 포함되어 있는 학술분과위원회 지원금과 과실금, 잉여금 또는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VI.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평의원 및 임원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 설치)

본회의 평의원 및 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3 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고, 전임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현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대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의원 및 임원선거 인명부의 작성
2. 직선평의원 투표지 발송, 접수 및 개표
3. 간선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학회장과 공동으로 평의원 및 임원당선 및 회의 소집 통보
6. 정기총회에 평의원 및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인준 요청

제 5 조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차기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소집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위임 및 결의방법은 본회 규칙에 따른다.

제 7 조

차기 임원의 선출은 새로 선출된 차기 평의원회에서 실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3년-1994년도 평의원 및 임원 선거 시부터 적용하며,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VII. 포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9장에 의거하여 학회일반상, 특별상, 감사패 및 기념패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포상의 목적 및 대상)

1. 본 학회는 자기학 분야 학문 및 기술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이 규정에 의거 포상한다.
2. 학회일반상과 특별상은 수상자 선정 시, 본 학회발간 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분과활동 등을 포함한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 우수논문상 및 논문상 선정 시에는 학회 저널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다.

제 3 조 (포상 종류)

1. 학회일반상은 공로상, 우원학술상, 기술상, 신진연구자상, 우수논문상, 논문상, JoM학술상, 우수대학원생상, 학술대회 발표상 및 기타상 으로 한다.
2. 특별상은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에 의해서 자기학회 발전을 기리기 위하여 수여하며, 강일구현대BNG스틸상, 아모상, 창성학술상 등으로 한다.
3. 감사패 및 기념패는 학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한 회원, 비회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4. 각종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포상의 시상 방법)

1. 시상은 한국자기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수행한다.
2. 포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하며, 각 포상의 시행 세칙에 따라 부상을 줄 수 있다.

제 5 조 (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매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포상의 시행 세칙에 따라 특별한 시기에 포상할 수 있다.

제 6 조 (포상의 수상후보자 추천)

1. 각 포상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추천자가 그 후보자를 한국자기학회 포상 규칙 제9장 30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2.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서식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정기일까지 추천한다.
3.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단수 추천인 경우 포상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 받을 수 있다.
4. 학술대회 발표상, 우수대학원생상과 기타상 등은 별도의 정한 시행 세칙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술대회 조직위원이나 별도의 공모심사위원 등 회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5. 각 포상 시행세칙에서 추천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 정회원 혹은 본인이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 (포상의 수상자 선정)

1. 포상대상자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본 규정 제6조에 의거 추천 받은자 중에서 각 포상에 따른 시행 세칙에 따라 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상, 우수대학원생상과 기타상은 이사회 인준 없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포상심사위원회 혹은 이사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연도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제 8 조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회장은 포상 규칙 제9장 30조에 의거하여 포상심사위원을 구성한다.
2. 포상심사위원회는 각 포상의 시행 세칙에 따라 각 포상후보자의 업적 심사 및 이사회에 추천할 포상후보자 선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의 시행)

1. 학회상 수상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각 학회상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이 없을 경우에는 학회 운영비에서 사용한다.
2. 학회상기금은 회원 및 외부기관에서 기증 받을 수 있다.
3. 학회상기금 운영 방법은 본 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수상자의 의무 사항)

학회상 수상자는 각 포상의 시행 세칙에 따라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단체명의 외부포상 후보자 추천)

1. 본 학회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학회 명의로 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① 한국자기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② 자기 관련 분야 연구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③ 자기 관련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외부기관의 포상 목적 및 취지, 요청 기관의 공신력, 추천 요청의 공식성을 고려하여 회장단이 추천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3. 추천 시에는 관련 공적사항, 이력 및 학회 기여도 등을 포함한 추천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우원학술상)

1. 기금 : 우원학술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 ① (주)우원테크놀로지(대표이사 : 오환원) 기부금 : 300만원/년
2. 수상자격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년간 우수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자기학 발전에 기여한 자
3. 수상내용 : 매년 1인에게 상장과 상금 300만원 수여를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 우원학술상 수상자는 1년 내 본 학회 학술지에 해설논문(review paper)를 게재하여야 한다.
5. 시상 :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6. 우원학술상 수상자는 수상 후 5년 이내에 중복 수상을 할 수 없다.

제 3 조 (기술상)

1. 수상자격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자기학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2. 수상내용 : 매년 1인에게 상장과 상금 100만원 수여를 기준으로 하며, 학회운영비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시상 :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 4 조 (신진연구자상)

1. 기금 : 신진연구자상은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 ① 이재일 제11대 명예회장으로부터 기증받은 기부금 1,000만원으로 조성한 기금과 과실금
 - ② 신진연구자상 시상을 위하여 운영한 사업의 잉여금 또는 신진연구자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 본 학회 정회원으로 최근 3년간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자기학 발전에 기여한 자
3. 수상내용 : 매년 1인 또는 다수에게 상장과 상금 100만원 수여를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 신진연구자상 수상자는 만 40세 이하 (해당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 한 번의 수상만 가능하다.
5. 시상 :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 5 조 (우수논문상)

1. 수상자격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년간 한국자기학회 학술지(국문지, 영문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한 자
2. 수상내용 : 매년 1인에게 상장과 상금 100만원 수여를 기준으로 하며, 학회운영비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후보추천 :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4. 시상 :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 6 조 (논문상)

1. 수상자격 : 본 학회 정회원 혹은 학생회원으로 최근 3년간 한국자기학회 학술지(국문지, 영문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한 자
2. 수상내용 : 매년 1인 또는 2인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인 (100만원) 수여를 기준으로 하며, 학회운영비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수상자 선정 : 저자의 연령을 1)만 35세이하, 2)만 36-54세, 3)만 5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한국자기학회에 발표한 논문(국문지, 영문지) 중 단독저는 3점, 2인 공저는 2점, 3인 이상의 공저는 1점을 부과하되, 제일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게 1점의 가산점을 주어, 1), 3)의 경우 점수합계가 10점 이상 취득한 자, 2)의 경우는 점수합계가 15점 이상인 자를 수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후보추천 :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5. 시상 :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 7 조 (JoM학술상)

1. 수상자격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SCI 학술지에 논문 투고시 한국자기학회 영문지의 논문을 다수 인용한 자
2. 수상내용 : 매년 1인 또는 2인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인(100만원) 수여를 기준으로 하며, 학회운영비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수상자 선정 : JoM학술상은 기존 SCI 학술지에 한국자기학회(영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 그 학술지의 영향지수(impact factor) 와 인용횟수를 고려하여 총점을 계산하여 일정점수 이상 회원에게 수상토록 한다.
4. 후보추천 :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5. 시상 :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 8 조 (성림우수대학원생상)

1. 수상자격 : 본 학회 학생회원으로 자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
2. 수상내용 : 매년 5인 또는 다수에게 상장과 상금 100만원 수여를 기준으로 하며, 학회운영비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후보추천 : 학생의 지도교수가 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4. 수상자 선정: 지도교수의 추천과 심사 직전 두 학술대회 발표실적 및 논문과 특허 발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5. 시상 : 당해년도 하계와 동계 학술대회(임시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약간 명씩 나누어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하계와 동계 학술대회(임시총회와 정기총회)중 한 번에 모두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세칙은 200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세칙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세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세칙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세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세칙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세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세칙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VII-2. 특별상 포상 시행 세칙

제 1 조 (강일구현대BNG스틸상)

1. 목적 : 한국자기학회 포상규칙 제9장에 의거 본 학회 창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강일구 박사의 공적을 기념하여 이 상을 제정하고 본 규정에 따라 수상한다.
2. 기금 :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 ① 김희중 제12대 명예회장으로부터 기증받은 기부금 1,000만원으로 조성한 기금과 과실금
 - ② 현대비앤지스틸주의 기부금 : 500만원/년
 - ③ 강일구상 시상을 위하여 운영한 사업의 잉여금 또는 강일구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3. 수상자격 : 다년간 학술 또는 기술 분야의 업적이 탁월하고 자기학 전문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국자기학회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으로 한다.
4. 수상내용 : 매년 1인에게 상패 및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5. 수상후보자의 추천 : 피추천자가 없거나 단수 추천일 경우는 회장단회의에서 복수가 되도록 추천의뢰 할 수 있다.
6. 수상자 선정 : 포상심사위원장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가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연도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7. 시상 : 당해년도 임시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8. 강일구상 수상자는 수상 후 5년 이내에 중복 수상을 할 수 없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0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세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세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세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세칙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아모상)

1. 목적 : 한국자기학회 포상규칙 제9장에 의거하여 (주)아모그린텍(대표이사 김병규 회장) 기부금 (300만원/년)에서 지원되는 아모상을 제정하고, 본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2. 기금 :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 ① (주)아모그린텍 대표이사 김병규 회장의 기부금 : 300만원/년
3. 수상자격 : 자기학분야 연구의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탁월한 한국자기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4. 수상내용 : 매년 1인에게 상패 및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5. 수상자 선정 : 포상심사위원장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시상 : 당해년도 임시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 상황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7. 아모상 수상자는 수상 후 5년 이내에 중복 수상을 할 수 없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제1회의 경우 2015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3.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세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창성학술상)

1. 목적 : 한국자기학회 포상규칙 제9장에 의거하여 창성장학재단에서 지원되는 창성학술상을 제정하고, 본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2. 기금 :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 ① 창성장학재단의 기부금 : 5천만원
3. 수상자격 : 자기학분야 연구의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탁월한 한국자기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4. 수상내용 : 매년 1인에게 상패 및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5. 수상자 선정 : 포상심사위원장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시상 : 당해년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수 있다.
7. 창성학술상 수상자는 수상 후 5년 이내에 중복 수상을 할 수 없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VIII. 회비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3조에 의거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 | |
|----------------|-----------|
| 1) 정회원 | : 20,000원 |
| 2) 학생회원 (대학원생) | : 20,000원 |
| 3) 학생회원 (학부생) | : 10,000원 |

2. 연회비

- | | | |
|-----------------------|---------------|--------------|
| 1) 평의원 | : 150,000원 | (정회원 연회비 포함) |
| 2) 정회원 | : 80,000원 | |
| 3) 학생회원 (대학원생) | : 50,000원 | |
| 4) 학생회원 (학부생) | : 20,000원 | |
| 5) 단체회원 | : 200,000원 | |
| 6) 특별회원 (Honors Club) | : 10,000,000원 | |
| (Diamond) | : 5,000,000원 | |
| (Platinum) | : 3,000,000원 | |
| (Gold) | : 2,000,000원 | |
| (Silver) | : 1,000,000원 | |

3. 다년회비

- 1) 다년회비는 5년 또는 10년 회비를 말한다.
- 2) 다년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5년 회비는 10%, 10년 회비는 20% 감액한다.
- 3) 정회원 연회비를 기준으로 하고, 평의원의 경우 정회원 연회비를 제외한 연회비 금액을 납입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IX. 기금 및 적립금 관리 규정**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40조에 의거 각종 기금 및 적립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과 적립금의 종류)

1. 기금은 본 학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일반기금과 기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지정기금으로 한다.
2. 적립금은 퇴직적립금과 본 학회 또는 기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한다.

제 3 조 (기금 및 적립금의 설정)

기금 및 적립금의 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기금 및 적립금의 관리)

학회의 각종기금 및 적립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무이사가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금의 보존과 운용)

1. 기금은 출연목적의 범위내에서 운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2. 본 학회가 관리하는 기금 및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 잔액은 원칙적으로 기금 또는 적립금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실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IX-1. 기금관리 운영 세칙**제 1 조 (목적)**

본 학회 기금 및 적립금 관리 규정에 의거 기금 운영에 대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기금 운영 세칙을 정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구성)

회장은 본 학회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며, 현 회장단 포함 전현직 이사 역임자중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임기는 회장단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3 조 (기금 및 과실금 운용)

1. 본 학회 기금의 과실금 일부로 학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기금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재정보고)

본 학회의 기금의 재정상태를 재무이사는 매 회장단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0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세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세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X. 윤리규정

한국자기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이하 회원)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연구 수행과정은 물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나 연구결과물을 평가할 때 그리고 학술지 편집과정에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연구결과를 소중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제 1 조 (저자자격기준)**

한국자기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개념 설정, 설계에 기여를 하였거나, 데이터의 획득, 분석 및 해석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
2. 해당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였거나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에 관여한 자
3. 해당 논문이 출판되기 전 최종본을 읽고 논문 투고를 승인한 자
4.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포함하여 본 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명기된 저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제 2 조 (정직과 성실의 의무)

회원은 연구수행에서는 물론 그 결과를 발표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날조 및 변조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는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실제 연구수행의 결과가 아닌 가공의 자료를 날조하지 않는다.
2. 연구수행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변조하거나 원자료의 일부를 임의로 선별하여 취함으로써 자료를 가공하지 않는다.

3. 타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허락 없이 도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저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모든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의해 선정된 책임저자는 논문 작성 및 투고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저자는 연구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 심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책임저자는 각 공저자가 기여한 연구관련 역할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수행에 기여를 하였음에도 공저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공저자가 될 수 없는 작은 기여에 대해서는 논문에 적절한 사사의 표현을 한다.
4. 공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타 공저자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책임을 진다.
5. 책임저자는 연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 공저자에게 작성된 논문을 검토할 기회를 주고 출판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 연구결과 출판 이후 오류가 밝혀진 경우에 책임저자를 비롯한 모든 공저자는 연구결과의 수정 및 보완 또는 철회의 의무를 갖는다.

제 4 조 (연구물의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의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2.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발표된 학술지 편집자의 동의를 받은 후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 (참고문헌 인용 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생각을 차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 어떤 부분이 타인의 이전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논문심사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사적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투고논문의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절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 조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심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조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 3 조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한 심사평 작성 시 전문지식에 따른 객관적 견해를 밝히되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 4 조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윤리규정 서약)

신입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이를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보)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회원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은 학회 윤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위반 사례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제보된 윤리규정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당연직으로 사업, 학술, 편집 부회장을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5 조 (윤리위원회의 활동)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소위원회의 설치)

윤리위원회는 제 5조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윤리위원회 내에 약간 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조사대상자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자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자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9 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자로 제보된 회원에 대한 학회의 최종 조처가 결정될 때 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지에 이를 공지하거나,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1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X. Code of Ethics

The Code of Ethics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ciety) defines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research ethics that members of the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s) must follow in the course of research activities. Members are committed to respecting the value of research and sharing research results in the processes of conducting research, publishing research results, evaluating research results, and editing journals.

Code of Research Ethics

Section 1. Ethical Responsibilities of Authors

Article 1. Criteria for Authorship

In order to be considered the author of a paper accepted by the *Journal of Magnetic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1. Contribution to the concept setting and design of the study, or substantial involvement in the acquisi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2. Contribution to the preparation of the paper or involvement in critical correction of academic aspects;
3. Reading of the final version of the paper and approval of it for submission;
4. Agreem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uthor's obligations specified in Articles 2, 3, 4 and 5 of this section, including the overall accuracy and integrity of the study.

Article 2. Duty of honesty and integrity

Members should be honest and faithful in conducting research and presenting their results. All researchers, including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search, must not commit dishonest acts such as fabricating or altering research results or plagiarizing others' research results. Specifically:

1. They must not fabricate data that is not the result of actual research.
2. They must not alter the original data obtained through research or select or omit certain parts of it to support a pre-determined or desired conclusion.
3. Do not use the research results of other researchers without permission

Article 3. Requirements to be observed as the author

1. The responsible author(s) selected with the consent of all research participants is(are) fully responsible for the writing, submission and review of a paper(s).
2. A co-author must be a researcher who has con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research, and the responsible author should disclose the research-related roles contributed of each co-author when requested by the reviewer.
3. A co-author must not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authors despite having contributed to the conduct of research, and those who have made contributions too small to justify co-authorship should be acknowledged in the paper.
4. The co-author takes responsibility as an author only for the part of the study that he or she actually performed or contributed to. The work is also recognized as his (or her) achievement. However, co-authors have limited responsibility for the contributions of other co-authors.
5. The responsible author gives all co-authors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written paper before submitting it, and obtains consent for publication.

6. If errors are found after pub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all authors, including responsible authors, are obliged to correct, supplement, or withdraw the research results.

Article 4. Prohibition of duplicate publication

1. The authors must not publish his or her previously published work (including those scheduled to be published or under review) as new work, regardless of whether the previous results had been published domestically or abroad.
2. If the authors intend to publish some parts of their research results that have already been published, they must provide that information to the editor after confirming that it is eligible for duplicate publication and that they hold any necessary copyrights.

Article 5. References

1. When quoting published academic materials or results, the source must be clearly identified, unless the information belongs to the realm of common sense.
2. Referencing must be done with enough precision that the reader can know which part is the quoted or referenced person's and which part is the author's original thought or interpretation.
3. In the case of paper reviews, the evaluation of research proposals, or citation of data obtained through personal contac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provider must be obtained

Section 2. Duties of Editorial Committee

Article 1

The Editorial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deciding whether or not to publish submitted papers.

Article 2

The Committee should treat the papers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a fair manner based on their quality and the submission rules, regardless of the author's gender, age, or organization, and regardless also of any personal relationship.

Article 3

The Committee should provide for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of submitted papers by referring that task to reviewers who have expertise in the given field.

Article 4

The Committee should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an author or the contents of a paper to anyone other than reviewers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submitted paper is confirmed.

Section 3. Duties of Reviewers

Article 1

The reviewer must faithfully evaluate papers provided by the Committee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review regulations, and must immediately notify the Committee of the evaluation result.

If the reviewer thinks that he or she is not an appropriate person for a given paper's review, he or she should notify the Committee of that fact without delay.

Article 2

The reviewer should evaluate the paper fairly according to objective criteria, regardless of personal academic beliefs or any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author.

Article 3

The reviewer should express objective opinions according to his or her professional knowledge when evaluating a manuscript, but should use polite and gentle expressions as much as possible and avoid criticizing or insulting the author.

Article 4

The reviewer must keep the confidentiality of a paper's contents. Unless special advice is required for the review process, reviewers should not show the paper to others or discuss its contents with others.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paper should not be ci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before the paper is published in the jour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Ethical Regulations

Article 1.

All members are deemed to have pledged to abide by this Code of Ethics, unless they express their intention to refuse.

Article 2.

When a member violates the Code of Ethics and does not intend to work out the violation on his or her own, the member who finds the violation can report it to the Society's Ethics Committee. If a report of a violation is received, the Ethics Committe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solve problems caused by the violation and discipline the member who violated the Code of Ethics. The Ethics Committee should not disclose information on the member who reported the other's violation.

Article 3.

The Society should establish the Ethics Committee, and the Ethics Committee takes necessary measures such as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for violations. The Ethics Committee should consist of 5 or more and 10 or less members including the vice president of business, the vice president of business academics, the vice president of business editorials, and a few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rticle 4.

The Ethics Committee may recommend appropriate sanctions to the president if the violation of the ethics regulations is found to be true after conducting rigorous investigations through informants, respondents, witnesses, reference persons, and evidence.

Article 5.

Members who have been reported as violators of the Code of Ethics must cooperate, with integrity, with the Ethics Committee's investigation to ensure that prompt and accurate decisions are made.

Article 6.

Members who are reported to have violated the Code of Ethics should be given appropriate opportunities to defend themselves.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should not disclose information on a member who has been reported as a violator of the Code of Ethics, until the Society decides finally whether to discipline that member or not.

Article 7.

Disciplinary measures for members who have violated the Code of Ethics are finaliz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convened by the president. The Society may punish such members with appropriate discipline such as a warning, suspension 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hip. The names of members who are determined to have violated the Code of Ethics may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Magnetics* and/or identified to 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1. The bylaw is effective from November 30, 2007.
2. The revised bylaw is effective from February 3, 2017.
3. The revised bylaw is effective from January 10, 2020.